

「'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」 시행 공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'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6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시행 목적

-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

2. 지원 대상

- ①'21.7.7.~'21.9.30. 동안 ②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

① (기간) '21년 7월 7일부터 '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
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소상공인법」) 개정·공포일(21.7.7.)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

② (방역조치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감염병예방법」)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

※ 그 외의 방역조치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
(예시) ▲면적당 인원 제한, ▲수용인원 제한, ▲시설 일부 사용 제한, ▲사적 모임 제한, ▲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

③ (손실) 영업이익 감소 (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)

④ (규모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【붙임1】

< 대상 시설 예시 >

방역조치	사회적거리두기 단계		
	2단계	3단계	4단계
집합 금지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흥·단란주점 ■ 클럽·나이트 ■ 감성주점 ■ 헌팅포차 ■ 콜라텍·무도장 ■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 ※ 사회적 거리두기 2~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
영업시간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당·카페 ■ 노래연습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당·카페 ■ 노래연습장 ■ 직접판매홍보관 ■ 목욕장 ■ 수영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당·카페 ■ 노래연습장 ■ 직접판매홍보관 ■ 목욕장 ■ 수영장 ■ 실내체육시설 ■ 학원 ■ 영화관·공연장 ■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■ 놀이공원 ■ 워터파크 ■ 오락실·멀티방 ■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■ PC방 ■ 카지노 ■ 이·미용업(21.7.7일~8.8일만 해당)

※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

3. 지급 기준

(산정방식)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

$$\text{손실보상금} = \text{일평균 손실액} \times \text{방역조치 이행일수} \times \text{보정률}$$

<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>

일평균 손실액(천원*)	×	방역조치 이행일수 (일)	×	보정률 (80%)
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2019년 영업이익률 +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** +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)				

*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

**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'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% 반영

1. 일평균 손실액

□ **기본 원칙** : 일평균 매출감소액('19년 대비 '21년)에 영업이익률('19년)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('19년)을 반영

○ (일평균 매출감소액)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(이하 인프라매출액)* 감소분('19년 대비 '21년)을 해당 월의 일(日)수로 나눈 값

* ▲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▲신용카드 결제금액, ▲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, ▲전자지급 거래액, ▲전자계산서 발급액

※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(이하 부가세매출액)도 활용

○ (영업이익률) 매출액('19년) 중 영업이익('19년)의 비중

○ (인건비·임차료 비중) 매출액('19년) 중 인건비와 임차료('19년)의 비중

*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·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% 반영

□ 세부 산정방식

① (일평균 매출감소액)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'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, '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

-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
- 최근에 개업하여 '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,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'20년 또는 '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'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
-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

$$\text{일평균 매출감소액} : \frac{('19\text{년 월 매출액} - '21\text{년 월 매출액}) \times '19\text{년 부가세매출액}}{'19\text{년 인프라매출액}} \div \text{해당 월의 일 수}$$

< 예외적인 경우 >

◇ '19년 7~9월 중 개업하여 '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

(예시 : '19.7.22. 개업 시 '19.7월 매출 발생 일수는 최대 10일에 불과)

☞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'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

☞ 해당 시설의 '20년 대비 '19년 동월 평균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'19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을 추정

* (예시) '19.7월 매출액 = '20.7월 인프라매출액 × $\frac{'19.7.시설평균인프라매출액}{'20.7.시설평균인프라매출액}$

◇ '19년 1월 ~ '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

◇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'19년~'21년의 7~9월 인프라매출액만 없는 경우(예시 : 사업장 공사, 계절적 요인, 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)

☞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
(단, 부가세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)

* (예시) '18년 이전 개업자 : $\frac{'19.부가세매출액}{365}$ × 시설평균매출감소율('19년 대비 '21년)

'19년~'20년 개업자 : $\frac{'20.부가세매출액}{영업한일수}$ × $\frac{'19.시설평균부가세매출액}{'20.시설평균부가세매출액}$
× 시설평균매출감소율('19년 대비 '21년)

◇ 보상 대상인 달('21년 7~9월)과 개업일이 속한 달이 일치하는 경우

(예시 : '21.7월 개업자의 '21.7월 보상금 산정)

☞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 활용

◇ '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, '19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과 '20년~'21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

(예시 : '21.7월 인프라매출액 × $\frac{'19.7.시설평균인프라매출액}{'21.7.시설평균인프라매출액}$ = '21.7월 인프라매출액)

☞ '21년 4~6월 평균인프라매출액으로 '19년 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

② (영업이익률, 인건비·임차료 비중)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('21년 개업,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)는 업종·시설별 평균값* 적용

* 평균값 산출 자료 : (영업이익률) '19년 귀속 경비율 고시(국세청)
(인건비·임차료 비중) '19년 서비스업 조사(통계청)

-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,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

기장(記帳) 유형	영업이익 산출 방법
복식부기 의무자	(영업이익) = (매출액) - {(매출원가) + (판매비와관리비)}
간편장부 대상자	(영업이익) = (총수입금액) - (필요경비)
기준경비율 대상자	(영업이익) = (총수입금액) - {(주요경비) + (기준경비)}
단순경비율 대상자	(영업이익) = (총수입금액) - (단순경비)

-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·시설별 평균값 적용

개업 시점	적용 자료
~'18.12.31.	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자료
'19.1.1.~'20.12.31.	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, 법인세 신고자료
'21.1.1.~'21.9.30.	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(국세청)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(통계청) ※ 개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9월까지의 자료로 대체 가능

2. 방역조치 이행일수

- 사업장별로 '21.7.7.~'21.9.30.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(日)수
 - (일반사업자)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·군·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
 - (폐업자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,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
 - (방역조치 위반자)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(日)수 및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3항*에 따른 운영중단·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

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위반시,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

3. 보정률

- 손실액의 8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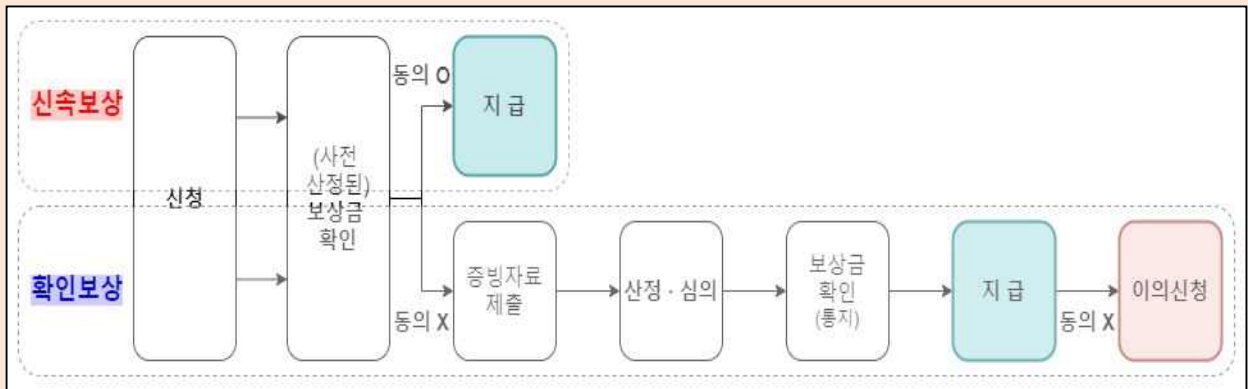
※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%로 의결

4. 보상금액의 상·하한

- (상한액) 분기 1억원 / (하한액) 분기 10만원
 -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,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◆ **【신청·지급절차】** ① 신속보상 →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,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② 확인보상 → ③ 지급 → ④ 이의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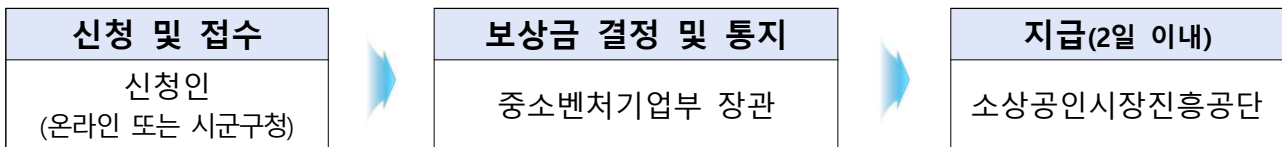


1. 신속보상

온라인 신청 : 10월 27일~

오프라인 신청 : 11월 3일~

< 신속보상 신청·지급 절차 >



□ 신청 및 접수

- (온라인) 손실보상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 접속·신청
 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·법인용 공동인증서) 절차를 거쳐 신청

<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·지급 절차 >

① 홈페이지의 '보상금 신청' 클릭 →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→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→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→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→ ⑥ 지급

- (오프라인)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(「소상공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호) 【붙임2】 를 작성·제출
 -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·군·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,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
 - *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 지참 필수

-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
 - 온라인 : 10월 27일(수)~10월 30일(토)
 - 오프라인 : 11월 3일(수)~11월 8일(월) 【※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및 부산】

온라인 신청	10.27(수)	10.28(목)	10.29(금)	10.30(토)
사업자번호 끝자리	1, 3, 5, 7, 9	2, 4, 6, 8, 0	1, 3, 5, 7, 9	2, 4, 6, 8, 0
오프라인 신청	11.3(수)	11.4(목)	11.5(금)	11.8(월)
사업자번호 끝자리	1, 3, 5, 7, 9	2, 4, 6, 8, 0	1, 3, 5, 7, 9	2, 4, 6, 8, 0

□ **지급** : 신청 당일~2일 이내 지급

< 신속보상 절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>

① 홈페이지의 '보상금 신청' 클릭 →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→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→ ④ 자가진단 → ⑤ 보상대상 확인요청(사업장 정보 입력) → ⑥ 방역조치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상금 산정·심의 → ⑦ 결과 통보 → ⑧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 신청

※ 관할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대상으로 확인받은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, 방역조치 대상 미확인 통보를 받았더라도 지자체에 재차 확인 요청 가능

□ **증빙서류**

① 온라인 신청 :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 (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)

예외 적용 대상 유형	제출서류
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	통합위임장
②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*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	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
③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	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
② 오프라인 신청

※ 필수서류 : 1)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2)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

대상 유형	제출서류
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	통합위임장
②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*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미보유자, 미성년자, 이름·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	1)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: 주민등록등본(초본) 2) 미성년자인 경우 : 통합위임장
③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* 입원, 해외체류 등 *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	대표자 명의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
④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(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)	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
⑤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*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	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

2. 확인보상

온라인 신청 : 10월 27일~

오프라인 신청 : 11월 10일~

< 확인보상 신청 · 지급 절차 >



□ 신청 대상

- ①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
 -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,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
- *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직접판매홍보관,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, 비영리법인 등

□ 신청 및 접수

- (온라인) 손실보상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 접속·신청
 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·법인용 공동인증서)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

<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확인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·지급 절차>

-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→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→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→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→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→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→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→ ⑧ 지급

- (오프라인)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* 【붙임3】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·제출

*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

-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·군·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, 신청인 본인확인,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

*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 지참 필수

□ 신청유형별 증빙서류

①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

※ 매출액에 관해서는,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**확인보상 증빙서류 대상에서 제외**

- (영업이익률, 인건비·임차료 비중) 업종·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(예시 : '19년, '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, '21년 개업자 등)

☞ ▲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('19년, '20년, '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), ▲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, ▲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(통장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)

【증빙서류 인정범위】

- ▶ '18년 이전 개업자 : '19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
- ▶ '19년, '20년 개업자 : '20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
- ▶ '21년 개업자 : 예외적으로 '21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

- (시설분류)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(예시 : ○○노래연습장 / 식당·카페)

☞ ▲시설분류확인서(지자체발급)

- (방역조치 일수)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

☞ ▲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*(지자체발급)

*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,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추가 제출 필요

② 보상금 사전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

- (상점·마트·백화점) ▲시설분류확인서(지자체 발급 - 건축물대장 필요)

- (직접판매홍보관) ▲시설분류확인서(지자체 발급 - 임대차계약서·현장사진 필요)

※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

- (방역조치 위반자) ▲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(처벌) 내역서(지자체발급)

- (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)

▲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

※ 【참고】 세부 유형별 제출·증빙서류

※ 오프라인 신청 시 공통 필수서류

- 1)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- 2)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

신청·접수 경로	대상 유형	제출서류
온라인 오프라인	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·임차료 비중 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('19년, '20년, '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) ■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(통장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)
온라인 오프라인	② 시설분류 정정	시설분류확인서(관할 지자체 발급)
온라인 오프라인	③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	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(관할 지자체 발급)
온라인 오프라인	④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m ²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분류확인서(관할 지자체 발급) ■ 건축물대장
온라인 오프라인	⑤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분류확인서(관할 지자체 발급) ■ 임대차계약서 ■ 현장사진
온라인 오프라인	⑥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	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(처벌) 내역서(관할 지자체 발급)
온라인 오프라인	⑦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	<p>인증서, 설립인가증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회적기업인증서, * 협동조합·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, * 사회적협동조합·연합회·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, * 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연합회·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
온라인 오프라인	⑧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	통합위임장
오프라인	⑨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*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미보유자, 미성년자, 이름·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: 주민등록등본(초본) 2) 미성년자인 경우 : 통합위임장

신청·접수 경로	대상 유형	제출서류
오프라인	㉠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* 입원, 해외체류 등 *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	대표자 명의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
오프라인	㉠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(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)	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
오프라인	㉡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*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,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	대리인 통장사본, 통합위임장 1) 가족 :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초본) (최근 1개월 이내) 2) 타인 :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

※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이미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

보상금 재산정

-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
 - 증빙자료를 통해 ▲영업이익률, ▲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, ▲방역조치 이행일자, ▲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→ 보상금 산식 대입

보상금 심의·결정

-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세부 검토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
-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

통지 :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

* 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지급 : 신청 당일~2일 이내 지급

-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은 전액 지급됨 (상·하한 적용)

3. 이의신청

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

< 이의신청 절차 >



□ 신청 대상

- ①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
- ②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
- ③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
- ④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

□ 신청 및 접수

- (온라인) 손실보상시스템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에 접속·신청
 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·법인용 공동인증서)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*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
- * ▲사업자등록증, ▲시설분류확인서, ▲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, ▲영업신고서, ▲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(처벌) 내역서, ▲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, ▲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, ▲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
-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

<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·지급 절차>

- ① 확인보상 신청결과 확인 →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→ ③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→ ④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 →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→ ⑥ 지급

- (오프라인)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**이의신청서* 【붙임4】** 와 **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·제출**(※ 환수통지 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)

*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

-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·군·구 담당자는 **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, 신청인 본인확인,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** 등을 거쳐 접수 완료

*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(대표자 또는 방문자) 지참 필수

□ **증빙서류**

- **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·제출**

* 방역조치 위반 내역 정정을 위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(지자체 발급) 추가 제출 필요

□ **보상금 재산정 심사**

- **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등을 반영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보상 결과에 대한 심사 진행**

□ **심사 결과 심의·결정**

- **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세부 검토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**
- **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또는 환수 결정**

□ **통지**

- **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**

*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(90일 이내) 가능하고, 연장 사유·기간 등을 통지

□ **지급 / 환수**

- **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(상·하한 적용)**
- **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으면 환수 절차 진행**

4. 보상금 감액 · 환수

□ 감액 · 환수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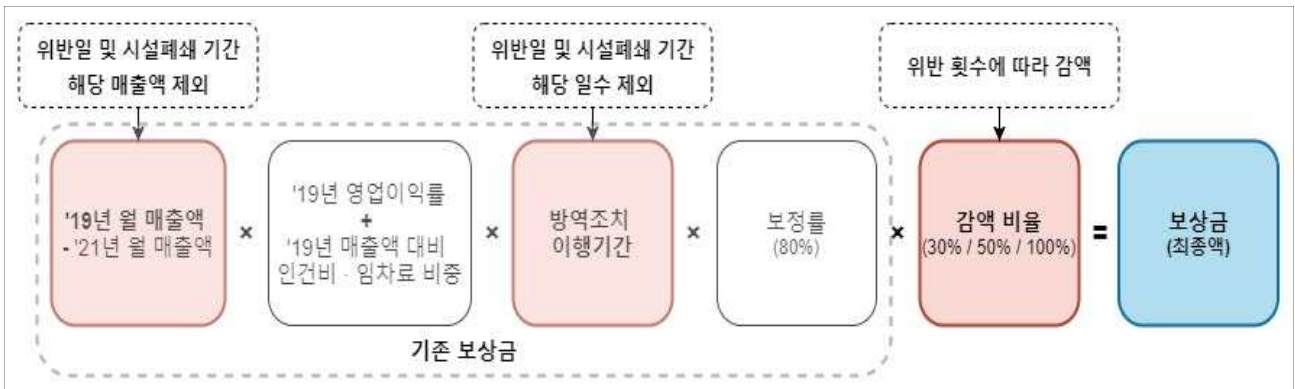
- (감액)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*

* 해당 위반 사실로 인하여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, 제80조, 제83조 등에 따라
 ▲과태료 부과, ▲벌금 부과, ▲운영 중단 ·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

- (환수) ①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,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,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자

□ 감액 · 환수 기준

- ① (방역조치 위반자) '19년 월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차감하고,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



- '19년 월 매출액* 및 방역조치 이행일수**에서 방역조치 위반일 및 그에 따른 시설폐쇄 기간만큼 제외하고 보상금 산정(상·하한 적용)

* '19년 월 매출액 x (1 - $\frac{\text{위반일} + \text{시설폐쇄기간(일)}}{\text{해당월일수(일)}}$)

** 해당월 방역조치 이행기간(일) - [위반일 + 시설폐쇄 기간](일)

-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(30%/50%/100%)만큼 보상금 감액

<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>

구 분		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차감일수	감액(안)
위반 횟수	1회	1일 + 시설폐쇄 기간	■ 보상금의 30% 감액
	2회	2일 + 시설폐쇄 기간	■ 보상금의 50% 감액
	3회 이상	해당 분기 전일	■ 보상금의 100% 감액

- 감액 산정된 보상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조치

② (허위 수급자) 지급된 보상금 전액 환수

③ (잘못 지급된 자) 잘못 지급된 보상금액만큼 환수

□ 감액·환수 절차

- (감액) 신속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, 확인보상 시 감액되어 지급
- (환수) 환수 사실 및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환수금액을 통지한 기한까지 납부
 - 환수금액 체납 시 「공공재정환수법」 및 「국세징수법」 등에 따라 ▲가산금 부과 및 ▲강제징수(독촉·압류·추심 등) 가능

5. 유의사항

-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, 개별 증빙은 불인정(확인보상·이의신청 반영 불가)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-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,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,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(단, 통합위임장 제출 필수)
- 신속·확인보상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, 이의신청 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검토·산정 예정
 - * (예시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등

6. 신청 문의

전화 문의

-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(☎1533-3300, 평일 09~18시 운영)
- 손실보상 전담창구(별도 파일 첨부, 평일 09~18시 운영)
 - * 각 시·군·구청 / 지방중소벤처기업청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온라인 문의

- 손실보상 홈페이지(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 후 '채팅상담' 선택
또는 채팅상담채널(손실보상114.kr) 직접 접속
 - * 상담원 : 평일 09~18시 상담 / 챗봇 : 24시간 상담 가능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요건

- ① 업력 36개월 이상 ⇨ 최근 3년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
- ② 업력 12~36개월 ⇨ 최근 1년 연간매출액 또는 최근 2년 평균매출액
- ③ 업력 12개월 미만 ⇨ 일 매출액 · 월 매출액을 통한 연간매출 환산액

<소기업 판단 시 연평균매출액 산식>

개업일		중소기업기본법상 연평균매출액	필요자료
①	~'17.12.31.	('18년, '19년, '20년 年매출액 합계) ÷ 3	연도별 매출액
②	'18.1.1.~12.31.	('19년, '20년 年매출액 합계) ÷ 2	
	'19.1.1.~12.31.	'20년 年매출액	
③	'20.1.1.~9.30.	'20.10월 ~ '21.9.30. 동안의 매출액 합계	월별 매출액
	'20.10.1.~ '21.8.31.	(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~'21.9.30. 동안의 매출액 합계) ÷ 개월수 × 12	
	'21.9.1.~9.30.	(개업일 ~ 9.30.까지의 매출액 합계) ÷ 일수 × 365	일별 매출액

<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관련 규정 >

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(이하 "회계관행"이라 한다)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. 다만,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.

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: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
2.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(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: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
3.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
 - 가.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: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(이하 "산정일"이라 한다)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(逆算)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
 - 나.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: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- 1) 산정일이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
 - 2) 산정일이 창업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

□ 업종별 소기업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(표준산업분류)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	
19. 광업	B	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	
32. 도매 및 소매업	G	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	E (E36 제외)		
35. 부동산업	L	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교육 서비스업	P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
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손실보상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 (대표자)	[] 개인사업자	상호명	
		대표자 성명	대표자 주민등록번호
		대표자 휴대전화번호	시설분류
		사업자등록번호	
		사업장주소	
		은행명 / 계좌번호(대표자)	계좌주
	[] 법인사업자	상호명	법인명
		대표자 성명	
		대표자 휴대전화번호	시설분류
		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		사업장주소	
		은행명 / 계좌번호(법인)	계좌주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■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이의 신청인 (대표자)	[] 개인사업자	상호명	
		대표자 성명	사업자 등록번호
	[] 법인사업자	상호명	법인명
		대표자 성명	사업자 등록번호

이의신청(다음중 택일) : [] 손실보상 대상 제외, [] 손실보상금 금액, [] 손실보상금 감액·미지급,
[] 손실보상금 환수

상세내용

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